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항
의 결 연 월 일	20 . . (제 회)	

가 맹 사 업 거 래 의 공 정 화 에 관 한
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공정거래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 및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 시 가맹본부의 협의 개시의무(불응 시 제재근거 신설)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2026.12.31. 시행 예정)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요건, 협의의 절차·기준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(안 제15조의3에서 제15조의5)

- 1) 개정법상 시행령에 단체의 등록요건을 위임함에 따라, 최소 가입비율·수 요건을 규정함.
- 2) 등록·변경등록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및 변경등록 항목별 기한 등을 구체화함.
- 3) 개정법에서 규정한 등록 취소 사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일부 예시를 제시함.

나. 가맹본부의 협의의무제 도입(안 제15조의2)

- 1) 개정법상 시행령에 협의 횡수·주제 등 협의의 기준 및 절차를 위임함에 따라, 협의 개시 기한·주제·횡수·참석자 범위 등을 규정함.
- 2) 등록단체의 대표성 보완 및 가맹본부의 부담 절감을 위해 등록단체의 의견수렴절차, 타 등록단체의 협의절차 참여, 협의절차 종료 효과 등에 대해 구체화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등록심사를 위한 전담인력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8. 3. ~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 예정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)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(이하 “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”라 한다)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및 광고·판촉행사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 단, 그 협의 요청이 법 제14조의2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12조의6에 따른 약정·동의 등 개별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14일 이내(부득이한 경우 14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)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 시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해당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사업자의 비율이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 외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에 협의절차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2회 이상의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. 단, 협의절차를 종결하는 것에 대해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에 의해 개시된 협의절차의 참석자는 참석시점의 가맹본부 소속 임직원 및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으로 한다. 이 경우 당사자를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도 포함한다.

⑦ 제2항에 따라 개시된 협의를 거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는 협의절차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수 없다.

⑧ 그 밖에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15조의3(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요건) ① 법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10%를 말한다. 이 경우 가입가맹점사업자 수는 30명 이상이어야 한다.

② 법 제1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”란 1,000명을 말한다.

③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요건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

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15조의4(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절차 등)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 변경 등록신청서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명칭·목적: 변경일부터 30일 이내
2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: 변경일부터 30일 이내
3. 구성원의 자격·명부: 변경이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
4. 대표자에 관한 사항: 변경일부터 30일 이내
5. 임원에 관한 사항: 변경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
6.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: 변경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
7. 그 밖에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

③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15조의5(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) ① 법 제14조의3제4항제1호에

따라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로서 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’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
1.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점사업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, 위·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단체를 등록한 경우
2.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입을 부당하게 강제·유도하는 등 자율적인 단체구성권을 침해하여 구성된 단체를 등록한 경우

②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3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**법 제39조제2항제2호**”를 “**법 제39조제2항제3호**”로 한다.

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·변경등록에 관한 업무를 조정원에 위탁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5조의2(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</u> <u>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) ①</u> <u>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</u> <u>한 가맹점사업자단체(이하 “등</u> <u>록가맹점사업자단체”라 한다)</u> <u>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가</u> <u>맹계약서 기재사항 및 광고·판</u> <u>촉행사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협</u> <u>의를 요청할 수 있다. 단, 그 협</u> <u>의 요청이 법 제14조의2제5항에</u> <u>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</u> <u>하는 경우 또는 법 제12조의6에</u> <u>따른 약정·동의 등 개별 가맹점</u> <u>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180</u> <u>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</u> <u>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</u> <u>받은 가맹본부는 14일 이내(부</u> <u>득이한 경우 14일 이내에서 연</u> <u>장할 수 있다)에 협의를 개시하</u> <u>여야 한다.</u> <u>③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 시</u> <u>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</u> <u>체 가맹점사업자 중 해당 등록</u>

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사업자의 비율이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 외 동일 영업포지를 사용하는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에 협의절차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2회 이상의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. 단, 협의절차를 종결하는 것에 대해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에 의해 개시된 협의절차의 참석자는 참석 시점의 가맹본부 소속 임직원 및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으로 한다. 이 경우 당사자를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

<신 설>

<신 설>

도 포함한다.

⑦ 제2항에 따라 개시된 협의를
거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는
협의절차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
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
시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
협의를 요청할 수 없다.

⑧ 그 밖에 등록가맹점사업자단
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필
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
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15조의3(가맹점사업자단체의

등록요건) ① 법 제14조의3제1
항제2호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10%를 말
한다. 이 경우 가입 가맹점사업
자 수는 30명 이상이어야 한다.

② 법 제14조의3제1항제2호나
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수”란 1,000명을 말한다.

③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
등록요건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
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
고시할 수 있다.

제15조의4(가맹점사업자단체의

등록절차 등) ① 법 제14조의3

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 변경 등록신청서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명칭·목적: 변경일부터 30일 이내

2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: 변경일부터 30일 이내

3. 구성원의 자격·명부: 변경이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

4. 대표자에 관한 사항: 변경일부터 30일 이내

5. 임원에 관한 사항: 변경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

6.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

<신 설>

사항: 변경이 발생한 연도의
다음 연도 1월31일까지

7. 그 밖에 등록가맹점사업자단
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
되는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
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

③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
등록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세
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
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15조의5(가맹점사업자단체의
등록취소) ① 법 제14조의3제4
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
는 사유로서 ‘거짓이나 그 밖의
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’
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
1.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점
사업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,
위·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
방법 등으로 단체를 등록한
경우

2.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
가입을 부당하게 강제·유도하
는 등 자율적인 단체구성권을
침해하여 구성된 단체를 등록

제36조(업무의 위탁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<u>법 제39조 제2항제2호</u>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를 「한국산업인력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한다.	<u>한 경우</u> ②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<u>등록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</u> <u>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</u> <u>할 수 있다.</u> 제36조(업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<u>법 제39조</u> <u>제2항제2호</u>에 따른 <u>등록가맹점</u> <u>사업자단체의 등록·변경등록에</u> <u>관한 업무를</u> <u>조정원에 위탁한</u> <u>다.</u> ③ ----- <u>법 제39조</u> <u>제2항제3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4991